

# 집합제한(방역지침 의무화) 행정조치 안내문

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**2020. 12. 1. 00:00부로 대전시에 소재한 일반관리시설에 아래와 같이 1.5단계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.**

- 처분당사자 : 이 · 미용업
- 처 분 내 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 
**〈의무화된 방역지침〉**

관리자 · 운영자	이용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4m<sup>2</sup>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 ·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</ul></li><li>▶ 이용자 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 · 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환기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<li>▶ 마스크 착용</li></ul>

-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
- 처분기간 : 2020. 12. 1.(화) 00:00 ~ 12. 14(월) 24:00까지(2주간)

- ※ 위 조치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일반관리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- ※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방역수칙 위반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자 ·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· 조사 ·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0. 12. 1.

대전광역시



# 집합제한(방역지침 의무화) 행정조치 안내문

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**2020. 12. 1. 00:00부로 대전시에 소재한 일반관리시설에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.**

- 처분당사자 : 목욕장업
- 처 분 내 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 
**〈의무화된 방역지침〉**

관리자 · 운영자	이용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8m<sup>2</sup>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<li>▶ 시설 내 음식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금지</li>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 ·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</ul></li><li>▶ 이용자 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 · 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환기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<li>▶ 마스크 착용</li></ul>

-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
- 처분기간 : 2020. 12. 1.(화) 00:00 ~ 12. 14(월) 24:00까지(2주간)

- ※ 위 조치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일반관리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- ※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방역수칙 위반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자 ·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· 조사 ·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0. 12. 1.

대전광역시

